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도시 지정 취소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실시를 의무화하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22.1.18. 공포, '22.7.19. 시행)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 취소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하위 법령 조항 중에서 「행정절차법」의 청문 절차와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 1) 현행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12.31~9999.12.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4항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도시 추진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삭 제> <삭 제> <삭 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연 락 처	(044) 203-2607